

Philosophy of Law, Politics, and Society
Philosophie des Rechts, der Politik und der Gesellschaft

Proceedings of the 12th International Wittgenstein Symposium
Akten des 12. internationalen Wittgenstein Symposiums

Schriftenreihe der Wittgenstein-Gesellschaft Vol. (Bd) 15

Editors(Herausgeber): Ota Weinberger, Peter Koller, and(und)
Alfred Schramm

Wien 1988, Verlag Hölder-Pichler-Tempsky

沈憲燮*

이 책은, 정확히 말해서 이 論文集은 1987년 8월 7일에서 14일 까지 奧地利의 Kirchberg am Wechsel에서 열린 제12차 國際비트겐슈타인심포지움에서 발표된 小論文들을 추려서 비트겐슈타인學會叢書 제15권으로 발간된 것이다. Kirchberg는 비트겐슈타인이 1920년에서 1926년 사이 자진해서 國民學校教師로 재임했던 곳의 작은 마을이다. 해마다 여름이면 이 곳에 전세계의 哲學者들이 哲學一般의 다양한 문제는 물론이고, 특히 비트겐슈타인의 哲學思想을 중심으로 小論文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심포지움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景觀과 함께 조용하기만한 이 작은 마을은 이 때만 되면 세계에서 모여든 철학자들의 討論으로 벌통집과 같이 변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철학자들도 이에 참가하여 발표한 논문이 출간된 것으로 안다. 이 심포지움의 情景이 어떠한지는 그분들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여기 소개하려는 이 책의 머리말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이 심포지움이 1987년 여름에는 드디어 ‘法과 政治와 社會의 哲學’을 主題로 열렸으며 여기에서 발표된 小論文들이 작년에 이렇게 출간된 것이다.

이 책은 전체가 3部로 이루어져 있는데 1部는 ‘道德, 法, 政治의 哲學的 基礎’를, 2部는 ‘社會科學의 哲學的 諸問題’를, 3部는 ‘哲學의 諸問題와 비트겐슈타인哲學’을 각각 다루고 있다. 논문들은 모두 60개이다. 이들 중에는 비트겐슈타인哲學과 관계없는 것도 많으나 그의 哲學에서 端緒를 얻거나 解決點을 찾으려는 것도 보인다. 우리로서는 이들 중 자연히 法哲學者들이 쓴 글들에 관심이 높리게 되며 또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생각이 든 것이다.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教授

우선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이 책의 共編者이기도 한 O. Weinberger의 ‘Moral—retrospektiv oder prospektiv?’ (道德一回顧的인가 또는 前向的인가?)이다. 올해 70세인 바인베르거교수는 法律家이면서 哲學者이다. 그는 지금 法理論家로서, 또 특히 規範論理學의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 바인베르거는 이 글에서 倫理的 및 法律的 考察이 한편 타부를 설정하고 制裁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回顧的이고 다른 한편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正當한 形成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는 前向的인 양면을 갖고 있으나 이때까지의 경향을 보면 지나치게 回顧的이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抑壓(抑制)의 道德에서 前向的(展望的)인, 다시 말해서 生의 歡喜의 道德에도, 따라서 또한 集團과 國家利己主義의 政治에서 理解와 協力의 政治에로 넘어서야 한다는, 말하자면 實踐哲學에서의 前向的 思考의 優位를 주장한다. 그는 道德(과 法)을 行動理論的으로 (handlungstheoretisch) 파악하면서 現實的이고 理性的인 삶의 原理는 道德과 權利의 調和를 폐하는데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道德에서는 原罪, 善과 惡의 實體化, 應報, 過去清算(Vergangenheitsbewältigung) 등의 抑壓的이고 回顧(後傾)의in 요소를 뒤로 하고 懷疑를 道德的根本德目으로 삼아 連帶와 共存과 寬容과 協調의 人道的 道德을 지향할 것을, 그리고 法에서는 法의 制裁性만을 고집 할 것이 아니라 法의 構導性과 構成的 側面을, 또 正義에서는 靜態의in 그것이 아니라 課題와 批判的 探索으로서의 그것을 보는 前向的 思考의 法學을 응호하고, 安定(平和)과 더 正義로운 社會制度 및 國際關係에로의 發展 사이에 調和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의 銳利한 法理論家로서의 모습 뿐만 아니라, 깊이있고 眞摯한 法政策家로서의 모습도 볼 수 있다. 바인베르거는 나치하의 猶太人集團收容所에서 천행으로 살아남은 이다. 前向的 道德觀이 그런 바인베르거에서 설파되었다는 점이 더욱 값지고 참된 것 같아 보인다.

이책의 共編者이고 Weinberger 교수의 제자이기도 한 P. Koller의 ‘On the Meaning and Extent of Social Freedom’도 흥미있는 글이다. 少壯교수인 Koller는 플라톤에서 칸트, 밀을 거쳐 오늘날의 롤즈에 이르기 까지 천재적인 두뇌들이 고심했던 社會的自由의 문제와 대결하면서 알찬 斷想을 펴려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無制限과 制限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 社會的自由는 역사적으로 이해도 달랐지만 오늘날은 ‘모든 이에 最大로平等한自由를 주어야 한다는 原理’ (principle of greatest equal liberty for all) 밑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社會的自由의 (經驗的) 内容과 (規範的) 範圍를 밝히고자 했다. 우선 社會的自由의 内容은 어떤 強制로부터 자유롭다는, 즉 強制의 不在라는 ‘消極的自由’와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能力으로서의 ‘積極的自由’ 사이의 對立으로서가 아니라 結合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社會的自由는 모두가 外的 強制와 抑壓이 최대로 不在하는 가운데 인간행동의 前提條件들(富, 收入, 社會的 힘, 法的 權利, 教育 기타 福祉와 健康의 社會的 條件)의 正當分配를 토대로 자기 能力에 따라 가능한 한 뜻대로 자기의 삶을 꾸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힌다. 다음으로 社會的自由의 範圍와 관련하여서는 부득이 그 制限을 생각

하여야 하고 이는 모든 이에 ‘平等한’ 自由를 보장하는 자유의 제한은 칸트도 이미 지적했듯이 우선, ‘一般的 規律’에 의한 그것이어야 하나, 문제는 이로 부터 個人自由의 ‘限界’가 명백히 밝혀지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이는 각자의 자유가 다른 각자의 自由와 어느정도의範圍에서 서로 兩立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兩立可能性의 해석인데 이도 칸트처럼 非排他性이라는 순 形式的인 규준에서 파악하는 것은 必要하지만 充分치는 못하다고 보고, 이는 나아가 행위의 모든 結果와 그것의 바람직함에 대한 評價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먼저 생각되는 것은 J.S. Mill의 유명한 ‘harm principle’이지만 이도 행위의 타인에 대한 有害와 無害의 경계가 반드시 명확치 않고, 더욱이 정말 無害한 경우는 실로 적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가진다해서 모두 금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라 거의 없을 것이고 삶은 翳翳한 일이 되고 말 것이기에 Koller는 타인의 자유와 兩立될 수 있는 개인자유의 범위에 관한 좀 더 세련된 원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에 “타인에 대해 상당히 否定的인 결과나 일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갖는 행위는 그러한 행위를 더 制限해서 오는 否定의 結果가 그것을 덜 제한해서 오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와 벌린 스를 잡는 범위까지 허용된다”는 原理를 제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원리가 提案한 것보다 더 제한하면 그것의 否定의 結果는 그것의 積極的 효과를 넘어서게 되어 利보다 害가 더 크게 되고 그 반대도 같다는 것이다. Koller의 이러한 結果主義의 원리도 否定의 結果와 積極的 結果 사이의 저울질, 그리고 그것의 바람직함에 대한 評價 등 매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고, 따라서 문제의 合理的 解決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이 基本的인 市民的 및 政治的 自由의 ‘合當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은 Koller와 함께 믿어 봄직하다. 특히 身體, 良心, 思想의 自由, 나아가 言論, 集會, 結社의 自由 등에도 ! 그러나 經濟的 自由는 自然的 資源과 社會的 富의 正義로운 分配와 融和될 수 있는 조건에서 정당화될 수 있기에 더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겠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大 法大교수인 Th. Földesi의 ‘Eine mögliche marxistische Gerechtigkeitskonzeption’(하나의 可能한 맙스主義의 正義觀)도 관심을 끈다. Földesi 교수는 먼저 正義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맙스주의적 正義觀과 가톨릭적 正義觀이 많은 接觸點을 갖고 있어 하나의 對話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그리고 正義는 플라톤이나 롤즈처럼 最高頂上의 價值도 또 켈езн처럼 아무런 價值도 아닌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 基本的 價值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런데 오늘날 社會主義國家에서도 社會的 正義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承認된 맑스主義의 正義觀이 없기에 하나의 ‘可能한’ 觀念을 소묘해 본다는 것이다. 이에 Földesi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正義觀들(‘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자에 그의 것,’ ‘인간의 自律性’ 등)을, 다른 한편으로는 맑스의 根本思想(‘正義의 歷史的 範疇性,’ ‘類的 存在로서의 인간(人道性)’,

‘인간의 疎外性’, ‘平等과 不平等의 辨證法’ 등)을 바탕으로 하여, 正義를 “인간에게 그가 歷史的 條件에 따라 그의 類的 存在를 전개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방해하는 疏外의 여러 형태와 싸울 수 있게 하여 주라”라고 구성해 본다. 그리고 이는 인간은 누구나 날 때부터 자기의 存在와 能力を 전개할 道德的 ‘權利’를 갖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社會的 平等’으로 이해되어야 하나, 社會的 不平等의 正義도 고려해 넣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原則的’ 平等性에 비추어 보아 社會的 不平等의 지나친 多數는 不正義이며, 따라서 社會의 一部만 疏外된 勞動을 하는 所有不平等은 不正義라고 지적한다. 나아가 人間性의 展開에는 勞動, 社會性, 自由 뿐만 아니라 財貨의 分配가 불가피한데 이는 우리의 與件상 제로섬 게임에 일치되는 것이어서 不平等한 分配가 불가피하고, 이의 規準으로 첫째 ‘成果’(勞動), 둘째 ‘必要’, 셋째 ‘功績’을 듣다. 이렇게 구성된 그의 正義觀도 그 活用에 있어서는 다른 價值와의 관계에서 矛盾과 딜레마에도 빠지고 또 分配의 規準들 사이의 충돌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래서 그 實現可能性에 대한 검토도 꼭 필요하며, 이렇게 볼 때 위와같은 맙스의 正義觀이 完全히 실현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正義로운 社會關係의 형성이란 決定의 문제가 아니라, 社會的・歷史的 ‘條件’들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서는 눈에 띠게 現存하는 社會的 不正義와 不平等을 줄여서 이점을 더 正義롭게 하는 것이 現實(主義)의이며, 이에 正義는 여러 영역에서의 機會均等의 體系의 改善, 지나친 收入差異의 減小, 不平等한 決定(參與) possibility의 減少를 요청한다고 지적한다. Földesi의 正義觀은 전통적 正義의 공식에 맙스의 人道主義의 價值論의 축면을 삽입해서 구성한 修正的이고 現實的인 社會主義의 社會的 正義觀이라고 볼 수 있다. 교집을 점도 없지 않으나(예컨대 分配規準의 順序) 주목할 점도 있다.

비엔나大法大 公法교수이며 Kelsen의 純粹法論(純粹法學)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는 R. Walter의 ‘Die reine Rechtslehre—Eine erkenntnistheoretische Fundierung der Wissenschaft vom positiven Recht’(純粹法論—實定法學의 認識論的 底礎)는 순수법론의 풀자를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다: 순수법론은 法學의 對象을 확정하고 그것을 가능한 한 正確하게 記述하는 두개의 과제를 갖는다. 法學의 對象으로서의 法은 우선 ‘規範의 體系’라고 말하나 이것은 다시 實定法이냐 自然法이냐로 논란된다. 그러나 沒價值의이어야 할 學問(法學)은 客觀的으로 인식할 수 없는 自然法은 信仰에나 맡겨야 하고, 19세기의 法實證主義의 견해에 따라 社會的 權威가 정한 實定法을 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는 것이 ‘善’한 것인가를 알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社會의 制裁規範이 무엇을 명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인간의 認識關心에 입각한 것이다. 그런데 이전의 法實證主義처럼 社會的 權威가 定한 것(事實)은 拘束的(當爲)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存在에서 當爲를 導出하는 誤謬를 범한다. 여기에는 또한 ‘強者の 自然法’이라는 自然法의 면도 보인다. 그런데 이는 社會的 權威가 定한 것은—그 意圖하는 의미에서 보아—當爲의

命令이라고 해석 ‘하려고’ 하는 이가 이러한 命令들을 當爲인 것처럼 ‘想定’하는 하나의 ‘根本規範’(Grundnorm)을 ‘前提’하면 해결된다. 이 점에서 순수법론은 칸트의 입장을 취한다. 물론 칸트의 自然法이 아니라, 認識論的 懷疑主義, 그의 實踐理性이 아니라 理論理性의 입장이다. 그리고 根本規範은 先驗的 前提이기 때문에 實定法의 正當化의 기능은 못 갖는다. 또 實定의 規範으로서의 法規範은 實在하는 規範設定者의 意思行動(命令)과 그것이 향하는 受命者를 갖는다(Kein Imperativ ohne Imperator und ohne Imperanten!). 또 命令者는 자기가 意欲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受命者는 命令을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 행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命令과 命令遵守의 ‘規範的’ 관계는 양자 사이의 偶然의이거나 因果의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는 예컨대 “主人이 휘파람을 분다. 개가 그에게 달려 간다”에서, 또 “놋닭은 울음소리로 암탉을 부른다”(비트겐슈타인의 예)에서 각각 구별할 수 있다.……이상이 Walter의 간략한 설명이다. 그는 지나치게 켈렌의 이론을 고수한다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學問의 同種交配가 아니나하는 비판(앵기쉬)도 받았으나 순수법론의 요점을 잘 정리해 주고 있다.

D. Busse의 ‘Normtextauslegung als Regelfeststellung? Zur Rolle von Wittgensteins Regelbegriff für die juristische Methodenlehre’(規則確認으로서의 規範文解釋, 法學方法論에 대한 비트겐슈타인의 規則概念의 役割에 대하여)는 비트겐슈타인의 哲學에 착안하여 法解釋을 검토한 것으로 주목을 끈다. 알다시피 비트겐슈타인의 後期哲學은 그 機能的 意味論으로 유명하다. 즉 그는 “하나의 말의 意味는 그것의 言語上의 使用이다”라고 보고, 말의 意味는 그 使用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러한 使用은 어떻게 말을 설명하는가? 그것은 使用이 凡例(패러다임)로서 模倣의 본으로 기능함으로써, 즉 ‘規則’이 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規則의 이해는 그 適用의 技術을 지배하는데 있으며, 이는 또 그 正確한 適用의 規準들을 인식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規則適用의 正確性의 規準들에 변화가 있으면 곧 새로운 規則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말은 規則없이는 意味도 갖지 않으며 그리고 이러한 規則을 변화시키면, 말은 다른 의미를 갖거나(또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는 또한 말을 변경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規則은 거역할 수 없이 따라야 할 命令이 아니라 우리의 實踐(Praxis)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비트겐슈타인의 言語哲學은 意味의 實體化나 規則의 플라톤이즘을 단호히 거부하는데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Busse는 이러한 비트겐슈타인의 意味論을 法學方法論에서 평가해 본다. 法도 言語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法文言의 해석은 불가피하게 言語的 表現의 해석이나 이해와 관계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洞察에 비추어 보면 不變的으로 定式化된 既存하는 法規範에 法適用者를 과 둑어 놓으려는 實證主義의 法傳統이 혼들리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즉 法規範의 適用이란 規則의 정확한 적용이거나 틀린 그것일 뿐이며, 亂 규범이란 確立된

實踐과一致되어 遵守되는 속에서 밝혀지는 그 어떤 것이며, 法規법은 規範適用의 行動에 의해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파악은 아직도 法官을 ‘법의 입’으로만 보려는 강한 현실에 비추어 하나의 難題입에 틀림없지만, 새로운 노력, 예컨대 定式化된 規範을 결코 規範 자체와 同一視하지 않고, 規範이란 法官의 適用行動을 통해 비로소 具體化하고 形成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Fr. Müller 등의 法方法論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Busse는 지적한다. 그리고 規則과 規則의 定式化가 같은 것이 아니라, 規則은 그것의 定式化 그 以上이며, 規則의 適用者는 그 解釋 및 設定의 實踐과 일치해서 규칙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傳統的인 方法들, 즉 文理的, 體系的, 歷史的 해석방법 사이의 임격한 分離線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 文理的 해석방법의 優位性도 이끌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방법들은 하나의 唯一한 ‘實踐’의 相互關聯的 部分이지, 이들을 서로 떨어져 있는 存在論의 實體로 보는 것은 甚大한 範疇的 誤謬를 범하는 것이고 비트겐슈타인이 克服하고자 했던 플라톤이즘에의 轉落이라고 지적한다. 法解釋이 단순히 意味論만에 관련된 것이 아니기에 문제점도 보이나 산뜻한 착안으로 여겨진다.

M. Herbert의 ‘Zum Begriff der Lebensform in der Theorie der juristischen Argumentation’(法律論議理論에서의 生活形式의 概念에 대하여)도 비트겐슈타인哲學에서의核心概念인 ‘生活形式’을 法律論議와 관련시켜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Herbert는 獨自的인 着想을 전개한다기 보다 이미 生活形式개념을 法律論議와 관련시켜 평가한 두 法哲學者, 즉 Aarnio와 Alexy의 견해를 소개하고 자기의 입장을 간단히 지적한다. 주지하듯이 70년대에 들어서서 ‘法律的 論議’의 이론이 국제적으로 활발히 토의되었다. 法律內容의 결정은 一義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란 드물고 많은 경우 여러 可能性 앞에 놓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의 内容決定이 慎意的인 것은 아니고 여러 解釋資料들은 토대로 해서 ‘合當한’ 結果에 이르기 위해 贊反의 根據를 등장시켜相互 考量하는 討議를 거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그것은 合理的 論議인 것이다. 이러한 論議가 진정 合理的이자면 모든 情報가 제공되고 偶然이 배제된 理想的 狀況에서의 受諾可能性, 즉 合意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은 無前提의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우리의 모든 암은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그 자체 疑心없이 根據지워진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것으로 前提된 基礎, 다시 말해서 그 자체 더 이상 正當化될 수 없는 ‘命題들의 보금자리’ 위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命題들의 보금자는 하나의 體系를 이루고, 이는 우리의 世界像을 형성한다. 우리의 암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限界도 뼈는 것이 體系이며, 우리의 世界像을 형성하는 體系는 또한 우리의 生活實踐을 위한 기초도 된다. 世界像의 이러한 ‘實踐的 側面’을 비트겐슈타인은 ‘生活形式’(Lebensform)이라 했다. 이 生活形式 역시 ‘正當화와 非正當화의 저편’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生活形式 안에서는 根據지움과 正當화가 가능하지만, 하나의 生活形式에서 다른 그것에의 移動은 合理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經驗的 命題와 관련하여 발전시킨 이러한 견해를 Aarnio는 人文科學 특히 法律論議에 적용 시킨 것이다. 그래서 그는 ‘合理的’ 法律論議는 하나의 生活形式으로 규정된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法律文言의 解釋에 대한 合意는 어떠한 生活形式에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同一한 言語使用, 同一한 世界像, 充分한 價值共感帶를 갖춘 聽衆(Auditorium)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Aarnio에 대해 法律的 論議理論의 무대에 彗星처럼 등장한 Alexy는 Aarnio의 견해를 수긍하면서도 世界像(生活形式)에 대한 ‘矛盾의 檢討, 經驗의 真理와 分析的 明確性의 확보, 役割交換을 통한 判斷基盤의 확대 그리고 基本的 確信의 生成糾明 등의 節次를 통해 合理的 談話(Diskurs)를 期합으로써 그것의 合理的 論議와 變更이 가능하고 따라서 生活形式의 굴레를 벗어 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法律論議에 대해 비트겐슈타인의 生活形式이 가지는 意味에 대한 Aarnio와 Alexy의 이와같은 견해에 대해 필자 Herbert는 Alexy의 주장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의 談話理論의 普遍性要請에 대해서는 參與者의 談話規則에 대한 受諾與否가 조건이 되므로 現實的 論議에 관한 한 拒否의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Herbert의 글은 Aarnio와 Alexy의 견해를 간략하게 잘 서술해 주고 있다. 法律的 論議理論은 한참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으로 ‘實踐理性’ (praktische Vernunft)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상으로 이 論文集에 실린 法哲學的으로 의미있는 논문들을 간단히 소개해 보았다. 여기의 논문들은 거의가 10면을 넘지 않게 짧게 쓰여져 있다. 실제로 여러 종류이고 내용도 모두 매우 알차 보인다. 마치 哲學的 談話의 陳列場과 같다. 물론 專門店의 그것이 아니라 큰 百貨店의 그것이다. 이렇게 비트겐슈타인 심포지움이 法, 政治, 社會의 문제에까지 哲學的 관심을 보인 것은 기쁜 일이다. 이제 오지리도 國제적으로 政治的 中立과 經濟的 安定 위에 翁년의 哲學에서의 ‘비엔나씨클’ (Wiener Kreis)과 法學에서의 ‘비엔나學派’ (Wiener Schule)의 영광을 다시 찾는 날이 멀지 않을 것 같다. 法哲學에서는 특히 Weinberger 교수의 研究活動이 이미 世界的 關心을 받고 있는 바이지만 말이다.